

공결처리 관련사항 안내

공결은 '공식적인' 사유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공결인정 사유 발생 시 아래를 참고하여 공결서를 발급받은 후 수강 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기 바랍니다.

1. 공결관련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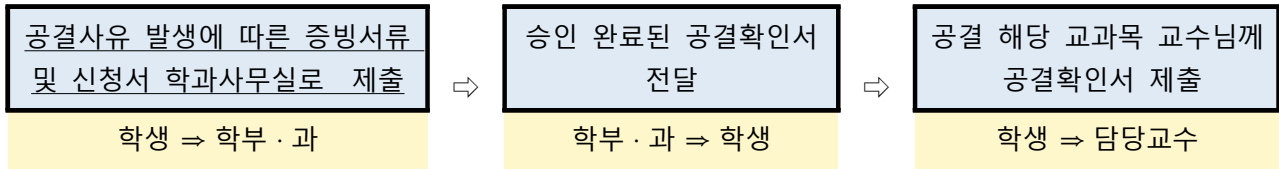
강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7조(공결) ①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출석을 점검한 결과 결석임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.

1. 「병역법」 및 「예비군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(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포함한다)된 경우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각종 공식행사에 총장이 허가하여 참가하는 경우
 - 가. 체육특기자가 학교대표로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
 - 나. 국내·외 각종 학술대회, 교류행사 등
3. 학교 밖 수업 등에 따라 다른 교과목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(다만, 학교 밖 수업 등을 운영하는 교과목의 담당 학부·학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)
4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
5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
 - 가. 본인의 결혼 : 5일
 - 나.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: 1일
 - 다. 본인의 출산 : 20일
 - 라. 본인 배우자의 출산 : 10일
 - 마.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: 20일
 - 바.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: 5일
 - 사.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: 3일
 - 아.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: 3일
 - 자.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: 1일
6.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 응시 및 면접 등에 참석하는 경우
7. 학기 당 4일 이내(월 1일에 한함)의 생리 공결의 경우. 다만, 시험 또는 각종 평가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8. 기타 상당한 이유로 학부·학과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공결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학부·학과의 장 또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그 밖에 공결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.

2. 공결처리 절차



3. 인정 가능 공결 요건 및 증빙 서류

(1) 신청 방법: 사유 발생 5일 이내 학과로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
(2) 인정 공결 사유 별 인정 일수 및 증빙서류

공결 사유			공결 인정기간	증빙서류
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에 정한 병역 동원 또는 훈련(신체검사 포함)			해당일	훈련참가 확인서, 신체검사 확인서 병역판정검사통지서 등
총장 허가 행사 참여 (학교대표로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, 국내·외 각종 학술대회, 교류 행사)			해당일	관련 공문 및 참가확인서 등
교외수업 참가			해당일	학과장 협조 공문 및 참여확인서
감염병에 따른 입원 등 (법정전염병 관련 내용 참조)			진단일	입퇴원확인서, 의사소견서 등 ●전염성 질병
경조사	결혼	본인	5일	사유 발생 증빙서류
		본인의 직계존속·비속	1일	
	출산	본인·배우자	10일	
	입양	본인	20일	
	사망	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	5일	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
		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	3일	
		본인의 자녀 또는 본인 자녀의 배우자	3일	
		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	1일	
취업을 위한 채용시험 또는 면접 응시			해당일	채용시험 또는 면접 참여확인서, 채용 관련 안내문
생리공결			학기 중 최대 4 회(월 1일)	진료확인서, 의사소견서, 진단서 중 택1
기타 사유로 학과장이 인정한 경우			해당일	해당 사유 증빙 서류 ●단순 병원 진료 불가